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1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안 제6조)
- 라.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지도·감독 및 홍보·교육(안 제10조 및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1. ~ 2022. 11. 17.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와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안 제4조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구청장의 책무(법 제7조 근거)와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규정함. (법 제5조 근거)

3) 안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제공자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으로 무상제공을 원칙(법 제6조 근거)으로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식품등의 이용횟수 등 조정 사항,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명시함.

4) 안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 식품등 기부와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법 시행령 제7조 근거)하도록 규정함.

5) 안 제8조(보조금 지원)와 제10조(지도·감독)

- 안 제8조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7조제2항 근거), 안 제10조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 제10조 근거)

6) 안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와 제11조(교육·홍보 등)

- 안 제9조는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

다. 검토의견

- 1998년 1월 외환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결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뱅크·푸드마켓을 처음 도입하여 서울·부산·대구·과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
-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3. 24. 제정)을 시행하여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고 식품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장려·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제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7. 2. 4. 시행, 2016. 2. 3. 개정)함.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금천구의 식품등의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 금천구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 현황(2022. 11월 기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강남, 강북,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서초, 성동, 양천, 중구), 전국에는 41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